808307604_0000016_02_03

안전은 생활입니다
KoELSA
KOREA ELEVATOR SAFETY AGENCY

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 안내

[고객안내번호 : 4013-1810-0314-2]

1. 건물정보

건 물 명	서울시청사
건 물 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)
안전관리자	명 * 봉 (교육유효만료일자 2019.08.16 일까지)

2. 납부계좌

국 민 은 행	19649078831242	기 업 은 행	08201449597151
농 협 은 행	79003932424701	신 한 은 행	26190179887210
우 리 은 행	27493473318004	우 체 국	81081280947910

※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내
-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은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신청 시 해당정보를 입력하면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며, 승강기민원24에서 고객안내번호 조회를 통해 출력 가능합니다.
-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 수정은 발급일로부터 익월 10일 까지만 가능합니다.

3. 검사대상 승강기 및 수수료

검사종류	정기검사	검사대수	4대	총수수료	505,780원

순번	검사주기 도래일	호기 (설치장소)	승강기 고유번호	승강기형식	승강기종류	운행층수/ 주행길이(m)	검사수수료 (*휴일야간)	번호판 수수료	분동 수수료	부가세
1	2018.10.13	7(1-7)	0082-347	로프식	승객용	15	131,600	0	0	13,160
2	2018.10.13	8(1-8)	0082-348	로프식	승객용	15	131,600	0	0	13,160
3	2018.10.13	20(1-20)	0082-360	로프식	화물용	13	125,900	0	0	12,590
4	2018.10.13	33(WL-2)	1902-263	스크류식	수직형휠체어리프트	2	70,700	0	0	7,070
합계							459,800	0	0	45,980

※ 동일건물 내 여러 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편의 등을 위하여 검사주기를 통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"승강기민원24"에서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승강기민원24 → 민원신청 → 행정민원 → 승강기 검사주기 조정신청)

※ 완성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분동수수료 안내
- 「승강기 안전검사기준」(행정안전부고시) 제17조와 관련하여 정격하중이 5,000Kg을 초과하는 승강기는 수검자(승강기 관리주체 등)가 분동(하중시험을 위한 무게추)을 직접 준비하여 하중시험을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 분동수수료가 제외됩니다.

문의 : 고객지원센터 1566-1277

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